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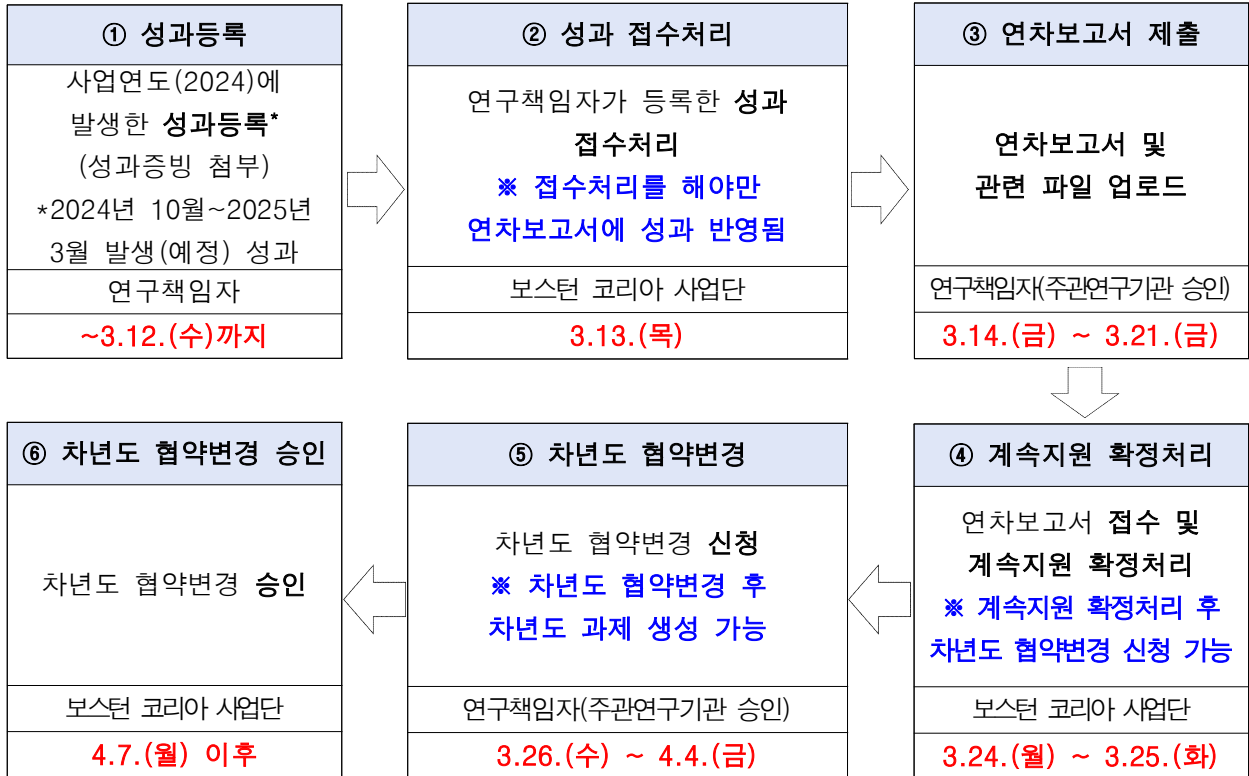
# 2025년도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 4월 개시 과제 연차보고서 제출 안내

### 1. 제출대상

○ 대상과제: 2025년 4월 개시 계속과제 ([붙임4] 참조)

### 2. 제출절차 및 기간



- \* 기한 내에 성과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단에 별도 문의하여 성과등록 완료 다음 날부터 연차보고서 제출 (성과 접수처리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된 성과가 연차보고서에 미반영 됨)
- \*\* 차년도 협약변경 승인이 되어야 차년도 정보가 통합이지바로 및 NTIS로 연계됨
- ※ **상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진행 가능**
- ※ 2024년도 연구과제 협약변경 신청(통보성, 승인성) 계획이 있을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전까지 필히 완료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메일 안내 예정

###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접속 후 성과등록 및 보고서 파일 업로드

<p>1) 성과등록(~3.12.) IRIS 로그인 → R&amp;D 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성과등록] → 과제조회(사업연도는 2024년) → 성과항목 등록(성과 증빙 파일 업로드 포함)</p> <p>2) 연차보고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3.14.~3.21.) 2-1) IRIS 로그인 → R&amp;D 업무포털 → [과제평가] → [보고서제출] → 과제조회(사업연도는 2024년) → 보고서 목록에서 해당 과제 클릭 후 하단의 [보고서제출] 탭 → 연차보고서 관련 파일 업로드 → [제출] 2-2) IRIS 로그인 → R&amp;D 업무포털 → [과제평가] → [보고서제출] → 과제조회(사업연도는 2024년) → 보고서 목록에서 해당 과제 클릭 후 하단의 [보고서제출] 탭 → [기관담당자 승인]</p> <p>3)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3.26.~4.4.) IRIS 로그인 → R&amp;D 업무포털 → [과제수행] → [협약변경-차년도 협약변경 신청] → 과제조회(사업연도는 2024년) →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p>
--

※ 성과등록 및 연차보고서 제출,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 방법은 [붙임6] 매뉴얼 참조

※ 연구원 등록/변경, 연구비 계좌 입력, 연구개발비 변경 등은 [차년도 협약변경] 단계에서 변경 가능

####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① (필수) 연차보고서	[붙임2] - 1	한글서식에 따라 작성
② (필수) 자체평가의견서	[붙임2] - 2	서식에 따라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③ (필수)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④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⑤ (해당시) [붙임2] 참조		

※ 연구비 집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내 다음연도 연구계획은 2025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에 대해 작성

####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관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과제는 사업단 계속지원 확정처리 후, 차년도 협약변경 신청 시 [연구개발비] 탭의 비목별 연구비 구성 내 연구시설·장비비에 해당 금액만 계상하고, 2025년도 연구 개시 후 (승인통보)협약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연구장비] 탭에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등을 별도 제출(사업단으로 공문 제출 필요)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는 사업단에서 심의하며, 1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사업단 검토 이후 ZEUS 심의 필요

※ 접수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는 사업단에서 건별로 검토 후 심의결과 안내

#### 4.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2025년도 조정 연구비는 [붙임4] 과제목록(엑셀파일)을 확인하여 작성
  - ※ 차년도 협약변경 시 연구비는 당초 연구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반드시 [엑셀파일의 2025년도 조정 연구비를 확인하여 계에 맞춰 비목별 연구비 재작성](#) 필요(단, 연구수당은 협약당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 불가)
- 성과 작성 대상기간은 2024년도 당해 연구기간(2024.10.1.~2025.3.31.) 동안의 연구 성과임
  - 논문 및 특허는 acknowledgement(사사)를 표시해야 하며,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등록) 또는 게재된 것만 인정
    - ※ 성과등록 방법은 붙임 참조
    - ※ accepted/in press인 논문도 성과등록 시 작성 가능
- 보고서는 [붙임2] 서식을 활용하여 한글파일(.hwp)로 작성하되 글꼴 및 크기 등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

#### 5. 2025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에 따른 협약변경 안내

- 2025년도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예산 확정액에 따라 계속과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
  - (조정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제3항 제1호
  - (조정내용) 2025년도 연구기간 축소에 따른 연구비 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연구기간		2025.4.1. ~ 2026.3.31. (12개월)	2024.4.1. ~ 2026.1.31. (10개월)
연구비	(유형 I) 국가전략기술확보형	3,000	2,500
연구비	(유형 II) 자유공모형	2,000	1,667

- 조정 연구비는 2차에 걸쳐 분리 지급([붙임4] 참조)

(단위: 원)

구 분		1차 지급 (차년도 협약변경 승인 이후)	2차 지급 ( '26년 1월)	합 계
연구비	(유형 I) 국가전략기술확보형	2,318,023,750	181,976,250	2,500,000,000
연구비	(유형 II) 자유공모형	1,545,685,000	121,315,000	1,667,000,000

- ※ 차년도 협약변경 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조정된 정보로 반영될 예정
- ※ 2025년도 연구비는 **감액되는 것이 아닌 연구기간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2025년도 연구기간이 2개월 축소되는 대신 2027년도 연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예정임
- ※ 조정된 총 연구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비는 주관-공동연구기관 간 협의하여 편성 (당초 기관별 구성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편성 요망)
- ※ 조정된 총 연구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여 직접비 및 간접비 재계산(간접비는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6. 기타 사항

### □ 연차보고서 제출 관련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처: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kucrf@snuh.org, 02-2072-4354/4353/4355)
- IRIS 관련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 □ 논문 사사표기 및 특허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하며,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해야 함

#### < 논문 >

-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번호 : RS-2024-00000000).”
  -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US Collaborative Research Fund(KUC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RS-2024-00000000)”
- ※ 과제번호는 RS-로 시작하는 해당 과제의 번호를 작성

#### < 특허 >

- \* 과제출처 기재 시기 : 특허 출원서 작성 시, 특허 출원서 보정 시
  - \* 과제출처 기재 방법
    - 【과제고유번호】 : NTIS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IRIS 과제번호 (RS-로 시작)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사업명】 :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 【연구과제명】 : (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 【기여율】 : 2개 이상 과제에서 지원된 경우, ○/□과 같이 분수로 적고 합이 1이 되도록 기재
    - 【주관연구개발기관】 : 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기간】 : 협약서 상의 연구기간
- ※ 과제번호는 RS-로 시작하는 해당 과제의 번호를 작성

###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여부

-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li> <li>•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li> </ul>

## □ 연구비 관련 사항

- 연구비 유용,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사업단에 보고
  -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업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사용액 부당회수 및 인건비 부당회수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 부당회수 및 인건비 부당회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

## □ 연구계획 변경 관련 사항(연구개시 후 협약변경)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R&D 업무포털-과제수행-(승인통보)협약변경신청-과제조회 후 협약변경신청 버튼 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승인성 협약변경 사항별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과제 변경/중단 신청서 파일 별도 등록 불필요(온라인으로 관련 내용 입력 후 협약변경신청 최종 확인 버튼 클릭 시 신청서 파일 자동 생성)

변경내용(협약변경신청 세부항목)	제출서류
<b>▶ 연구과제 중단(조기종료 포함)</b> ※ 변경신청 화면 내 변경항목 선택 > 수행포기 선택 및 필수입력 정보 입력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증빙서류(정당한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당연도 연구비 집행내역 ※ 통합이지비로시스템 집행(예산실적)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 용도별 예산/집행액/집행잔액이 확인 가능한 자체 서식으로도 제출가능 ④ 최종보고서 ⑤ (해당 시)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 사유서
<b>▶ 연구과제명 변경</b>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기본정보 탭 > 변경항목 선택 > 연구개발내용(과제명)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 연구목표(내용)와 과제명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 각각 신청 ※ 변경사유 란에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4000bytes까지 입력 가능)하고,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자유 서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문서 첨부
<b>▶ 연구목표(내용)</b>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과제요약 탭 > 변경항목 선택 > 최종 목표 변경	
<b>▶ 연구기간 변경 (육아휴직 등)</b>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과제요약 탭 > 변경항목 선택 > 전체/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 연구기간 연장 시, 마지막 연차 연구기간을 연장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출산/육아휴직에 한해 증빙서류(출산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증명서 등) 제출
<b>▶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연구(해외체류)</b>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 활동비(출장비)로 계상불가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기관 탭 > 변경항목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항목 선택 > 변경사유 선택(국내파견 등)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국내·외 파견연구(해외체류) 신청서 ③ 증빙서류 - 초청편지 - 주관연구기관장 동의서 또는 인사발령 관련 공문 등

변경내용(협약변경신청 세부항목)	제출서류
<p>▶ <b>주관연구기관 변경</b></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gt; 연구기관 탭 &gt; 변경항목 선택 &gt;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p> <p>※ 연구개발비 탭 내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 팝업창 작성 필수</p>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p>② 변경 전/후 주관연구기관 동의서(포기서)</p> <p>③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p> <p>④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관 퇴직증명서</li> <li>- 이직할 기관 재직(예정)증명서</li> </ul>
<p>▶ <b>공동, 위탁연구기관 변경</b></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gt; 연구기관 탭 &gt; 변경항목 선택 &gt;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p> <p>※ 연구개발비 탭 내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 팝업창 작성 필수</p>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p>② 변경 전/후 주관연구기관 동의서(포기서)</p> <p>③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p> <p>④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관 퇴직증명서</li> <li>- 이직할 기관 재직(예정)증명서</li> </ul>
<p>▶ <b>연구책임자 변경</b></p> <p>-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gt; 연구기관 탭 &gt; 변경항목 선택 &gt;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p>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p>② 변경 전/후 연구책임자 동의서(포기서)</p> <p>③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p> <p>④ 변경 전 연구책임자 관련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이동 증빙서류 등</li> </ul> <p>⑤ 변경 후 연구책임자 관련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li> <li>-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li> <li>-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li> </ul>
<p>▶ <b>승인성 연구개발비 변경(시설장비심의)</b></p> <p>-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신규 구입/변경/취소</p> <p>※ 구입 후 반드시 ZEUS에 등록</p> <p>※ 1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ZEUS 심의 필요</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gt; 연구장비 탭 &gt; 변경항목 선택 &gt;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3천만원 이상, 구축포기/변경 및 신규 도입)</p> <p>※ (필요시)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gt; 연구개발비 탭 &gt; 변경항목 선택 &gt; 연구시설장비</p>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p>②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p> <p>③ 장비 중복성검토 확인서</p> <p>④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 견적서</li> <li>- 제품 카탈로그</li> </ul>
<p>▶ <b>승인성 연구개발비 변경(시설장비심의 외)</b></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gt; 연구개발비 탭 &gt; 변경항목 선택 &gt;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선택</p> <p>※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에 한함</p>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 통보성 협약변경은 사업단 승인 없이 반영(단, 승인성 및 통보성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단 승인 전까지 통보성 변경도 보류됨)

※ IRIS 기능개선 등에 따라 메뉴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중단 과제 관리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승인 요청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아래)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 □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 검토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유관기관으로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ttp://irb.or.kr> ([irb@nibp.kr](mailto:irb@nibp.kr))

##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 □ 연구노트 작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 □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안전법·제도 문의처: 043-240-6477)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https://safe.koar.kr>) 활용 권고

## □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